

제 호 <h2 style="margin: 0;">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</h2>				
허가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력 포획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포획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기피해방지			
허가받은 자	성 명			생년월일
허가사항	기 간 ~		
	방법 및 도구			
	지 역			
	종 류		수 량	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				

준수사항

1.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
2. 포획기간 · 지역 ·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3.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4.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5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